忠淸北道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中改定條例案

檢　討　報　告

1. 提出者 : 忠淸北道知事

2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가. 提出日字 : 1993년 1월 29일

나. 回附日字 : 1993년 1월 29일

3. 提案理由

○ 에너지 利用 合理化法이 改正됨에 따라 同 條例에 適用되는 條文이 相異할 뿐 아니라 또한 同法이 改正되면서 過怠料가 200% 引上 調整되었으며,

○ 冷·煖房 溫度 制限 基準 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賦課基準이 新設되어 上位法에 맞게 改定하려는 것임

4. 主要骨子

○ 에너지 使用者 等에 대한 過怠料 200% 引上 調整

○ 冷·煖房 溫度制限 基準 違反者에 대한 過怠料 賦課基準 新設

5. 檢討意見

○ 忠淸北道 "에너지" 使用者等에 關한 過怠料 徵收 條例는 "에너지" 利用 合理化法 및 同法 施行令의 根據를 두고 1991. 1. 8 制定 施行하여 왔습니다.

○ 以後 本 條例의 制定 根據法인 "에너지" 利用 合理化法 (1991. 12. 14 改正)과 同法 施行令이 改正 (1992. 7. 1 改正) 됨에 따라 條例中 內容 一部를 改正하게 되는 것으로서

○ 改正 內容을 檢討하여 보면 過怠料는 關係 法令 및 條例上의 義務를 違反함에 따른 當然한 措置이기는 하나 過怠料 賦課料率이 當初는 上限線으로 100萬원에서 300萬원 (法 92條)으로 무려 200%나 大幅 引上 調整되는 것입니다.

○ 本 條例上 適用을 받는 對象 業體는 1992年度末 現在 190余個의 業體로서 그 分布 狀況을 보면 中小企業 生産 業體가 80% 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其他 公共施設, 아파트, 호텔 等 順으로 되어 있습니다.

○ 지금 中小企業運營 狀況에 對하여는 國家的으로도 커다란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中小企業의 育成, 活性化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생각하여 볼때 이들 業體의 負擔에 關한 것은 깊이 생각하여 볼 여지가 있다고 思料됩니다.

6. 別 添

○ 忠淸北道 에너지 使用者等에 대한 過怠料 徵收 條例中 改正 條例案 1附
○ 新舊條文 對備表 1附
○ 關係法令 1附